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사무위임전결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9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98호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사무위임전결 규정 일부 개정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사무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별표] 위임 전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공통사항 중 윤리감사팀의 팀장 전결사항 관련 내용을 신설 한다.

[별표] 공통사항 중 ‘복무’ 항목의 ‘(7) 유연근무제’를 신설하여 ‘가. 대표이사’는 ‘이사장 전결’, ‘나. 국·관장’과 ‘다. 팀장’은 ‘대표이사 전결’, ‘라. 팀원’은 ‘국장·센터장·관장’ 전결로 한다.

[별표] 기획홍보팀 중 ‘조직·정원’ 항목을 신설하여 ‘(1) 조직 및 정원관리’, ‘(2) 기구 신설 폐지 및 개편’, ‘(3) 정원승인신청’을 ‘대표이사 전결’로 하고 ‘(4) 업무분장조정’은 ‘팀장 전결’로 한다.

[별표] 총무팀 중 ‘인사관리’ 항목의 ‘(4) 조직 및 정원관리’, ‘(5) 기구 신설 폐지 및 개편’, ‘(6) 정원승인신청’, ‘(11) 업무분장조정’을 삭제하고, ‘안내데스크’ 항목을 신설하여 ‘(1) 스포츠시설 이용권 관리’, ‘(2) 이용요금 징수 및 정

산’, ‘(4) 사물함의 이용안내 및 요금 징수와 정산’ 은 국장·관장 전결, ‘(3) 안내데스크 업무 진행’, ‘(5) 회원 수강료 접수 및 환불업무’ 는 팀장 전결로 한다.

[별표] 스포츠시설팀 중 ‘스포츠시설운영’ 항목의 ‘(4) 스포츠시설 이용권 관리’, ‘(5) 이용요금 징수 및 정산’, ‘(9) 안내데스크 업무 진행’, ‘(10) 사물함의 이용안내 및 요금 징수와 정산’ 과 ‘기타’ 항목의 ‘(6) 회원 수강료 접수 및 환불업무’ 를 삭제한다.

[별표] 여성가족사업팀을 ‘여성사업팀’, ‘가족사업팀’ 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분리 개편 하며 각각 ‘정책사업’ 항목의 ‘(1) 여성가족정책 종합계획 수립’ 을 ‘(1) 정책 종합계획 수립’ 으로 하고 ‘(2)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을 ‘(2) 가족정책 연구·개발’ 로 하고, ‘교육사업’ 항목의 ‘(10) 안내데스크 및 유아실 운영’ 을 ‘(10) 유아실 운영’ 으로 한다.

[별표] 청소년놀터를 삭제한다.

[별표] 청소년팀을 ‘청소년활동팀’ 으로 명칭변경하고 ‘청소년교육팀’ 을 신설한다. ‘청소년활동팀’ 의 ‘목적사업’ 항목 중 ‘(3) 청소년교육 운영’, ‘기타’ 항목의 ‘(4) 시설 및 기자재 관리’ 를 삭제한다.

[별표] 청소년교육팀의 ‘목적사업’ 항목을 ‘(1) 연간계획수립 및 연말 사업보고’ 대표이사 전결로 하고, ‘(2) 청소년교육 운영’, ‘(3) 병상장 및 운영관리’, ‘(4) 실내체육관 운영 및 관리’ 를 국장·관장 전결로 한다.

[별표] 청소년교육팀의 ‘홍보’ 항목을 ‘(1) 기관 홍보 및 사업관련 간행물 제작’, ‘(2) 사업관련 홍보지 및 홍보물 제작’ 으로 국장·관장 전결로 한다.

[별표] 청소년교육팀의 ‘전산관리’ 항목을 ‘(1)장단기 전산 계획수립 및 조정’ 은 대표이사 전결로 하고, ‘(3)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도입, 설치’ 는 국장·관장 전결, ‘(2) 전산업무 보안 및 자료관리’, ‘(4) 컴퓨터 설치 및 관리’, ‘(5) 전산실 및 각종 시스템 운영 관리’ 는 팀장 전결로 한다.

[별표] 청소년교육팀의 ‘기타’ 항목을 ‘(2) 강사 및 회원 표창(내부 및 외부 추천)’ 을 국장·관장 전결로 하고, ‘(1) 강사 및 회원 증명서(수료) 발급’, ‘(3) 시설 및

기자재 관리’, ‘(4) 회원관리’, ‘(5) 회원 수강료 접수 및 환불업무’ 를 팀장 전결로 한다.

[별표] 시설관리팀 중 ‘전산관리’ 항목과 그 이하 내용을 삭제한다.

[별표] ‘14. 스포츠운영팀’ 을 ‘10. 스포츠운영팀’ 으로 하고 ‘스포츠시설운영’ 항목의 ‘(4) 스포츠시설 이용권관리’, ‘(5) 이용요금 징수 및 정산’, ‘(9) 안내데스크 업무 진행’, ‘(10) 사물함의 이용안내 및 요금 징수와 정산’, ‘기타’ 항목의 ‘(6) 회원 수강료 접수 및 환불업무’ 를 삭제한다.

[별표] 순번을 개편하여 ‘6. 여성사업팀’, ‘7. 가족사업팀’, ‘8. 새일센터’, ‘9.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11. 청소년정책팀’, ‘12. 청소년문화의집’, ‘13. 청소년성문화센터’, ‘14. 청소년활동팀’, ‘15. 청소년교육팀’, ‘16. 시설관리팀’ 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